

중국의 증치세 관련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2019 년 3 월

CTAC 한국서비스팀

김일중 회계사

1. “완전히 경외에서 소비”란 무슨 의미인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에 의한 증치세 과세대상은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이 해당이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경내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①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경외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 ②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경외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을 판매할 경우.
- ③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경외에서 사용하는 유형동산을 임대할 경우.

여기서 완전히 경외에서 발생(사용)한다라 함은, 해당 서비스(예시: 전시회, 창고저장 등)가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혹은 해당 무형자산(예시: 특허 또는 비특허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경내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외 소재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 호) 제 1 조 및 제 13 조

2. 2016 년 4 월 30 일 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간이계세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납세자가 2016 년 4 월 30 일 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일반계세방법과 간이계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계세방법은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간이계세방법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한 값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에 일반계세방법에 적용되는 세율은 간이계세방법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다.

따라서 간이계세방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납세자라 할 지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건물 임대의 경우 일반계세방법에 적용되는 세율은 9%이고, 간이계세방법에 적용되는 세율은 5%이다.

관련법령:

-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 호) 첨부 2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제 1 조 9 항

3. 일반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각각의 장 단점은 무엇인지?

(1)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의 기준

기준	일반납세자	소규모납세자
연간 매출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구분 없이 500 만 위안 초과 • 세무신고 매출액, 조사조정 매출액, 납세평가조정 매출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구분 없이 500 만 위안 이하 (500 만 위안 포함) • 세무신고 매출액, 조사조정 매출액, 납세평가조정 매출액 포함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기준 미달, 단 회계결산이 온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자연인) • 소규모납세자를 선택하여 납세하길 원하는 납세자

(2)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일반납 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증치세 공제 가능, 초과부분 이월공제가능 • 수출화물 증치세 퇴세 가능 •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매입세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매출 총이익이 높을 경우) 세액이 큼. • 납세신고절차가 소규모납세자보다 복잡함
소규모 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세율(3%) • 제품 구매 시 지불한 증치세는 제품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증치세 공제 불가 • 수출재화 증치세 퇴세 불가 • 자체적으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무국에 대리발행 신청해야 함(숙박업, 검증자문업, 건축업, 공업, 정보전송 및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 생활서비스와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자체 발행 가능)

관련법령:

- ▶ 증치세잠행조례 제 13 조
-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 28 조
- ▶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재세[2018]33 호) 제 1 조
- ▶ <소규모납세자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자체 발행 시범지역 확대 등 사항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9 년 제 8 호)

4. 일반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등기할 수 있는가?

일반납세자로 등기한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의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다.

국가세무총국의 특별 규정에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반납세자는 2019 년 12 월 31 일 전까지 소규모납세자로 전환등기할 수 있다.

- (1) 증치세잠행조례 및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에 의하여 이미 일반납세자로 등기된 일반납세자
- (2) 전환등기 전 연속 12 개월(월별 신고 시) 또는 연속 4 개 분기(분기별 신고 시) 누적 매출액이 500 만위안 이하인 일반납세자

전환등기 전 경영기간이 12 개월 또는 4 개 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과세 매출액에 근거하여 누계 매출액을 추정한다.

관련법령:

- 증치세잠행조례 제 13 조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 28 조
-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 등 몇 가지 증치세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8 년 제 18 호) 제 1 조
-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정책에 관한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 년 제 4 호 제 5 조

5. 해외로 기술지원 서비스비용 지불 시, 송금금액이 5 만불 이하면 증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중국 경내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술지원 서비스비용을 지불할 경우, 송금금액과 상관없이 대금지급인이 증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서비스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며, 매회지급 또는 만기지급 시 지급대금 또는 만기지급대금에서 원천징수한다.

상기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건당 USD50,000 이하의 금액을 해외로 지불할 경우 은행에 관련 세액납부증빙의 제출 없이도 결제를 처리할 수 있지만, 건당 USD50,000 를 초과하는 지불의 경우, 중국의 지급인 관할 세무기관에 세무신고(공장을 날인한 계약서 또는 관련 거래증빙의 복사본 및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등록표>,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사항통지서> 제출)를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득한 신고서류를 지불은행에 제출하여야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당 USD50,000 이하의 금액을 해외로 지불할 경우에는 증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지급인은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 세금을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 호) 제 1 조 및 제 10 조
-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 40 호) 제 1 조 및 제 2 조

6. 총공사와 분공사간의 증치세 이슈

총공사인 A 사는 천진에 소재하고 주로 생산, 창고관리, 판매 등 기능을 수행하고 A 사의 분공사인 B사는 북경에 소재하고 주로 재무관리, 시장조사와 판매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B사는 독립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A사에서 B사의 총공사와 분공사를 통합하여 장부를 기록(“통합결산”)하고 있다. 고객과의 거래 시 A사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고객에게 증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A사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다. 이때 B사는 소재지역인 북경에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2 개 이상의 분공사를 운영하여 “통합결산”을 하는 납세자가 재화를 총공사에서 분공사로 이송하여 “판매를 할” 경우, 분공사와 총공사가 동일한 시에 소재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주매출로 처리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를 하다”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를 만족시킬 때를 가리킨다.

- (1) 재화를 이송받는 분공사가 구매자에게 증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2)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따라서 B사는 북경에서 증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분공사의 증치세를 소재지역이 아닌 총공사에서 통합하여 납부할 경우 관할 세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또한 통합결산을 하는 분공사가 사실 소재지역에서 고객개발, 연구개발 또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주체로 간주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국에서 증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관련법령:

-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 4 조 3 항
- ▶ <기업의 소속기구간 화물이송에 대한 증치세 징수에 대한 통지>(국세발[1998]137 호)
- ▶ <증치세잠행조례> 제 22 조 1 항

7. 이월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일부 특정산업에 종사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신용등급이 A 급 또는 B 급인 회사만 가능)의 이월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이월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일부 특정산업에는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 전력망기업을 포함한다. 본 정책은 2018 년에 발표된 것으로, 그 배경은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후 여러 가지 증치세 세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산업, 투자초기 기업에는 이월매입세액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회사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초기투자(설비 구매, 공장 건설 등)에 의한 매입세액이 회사의 자금을 대부분 점용하고 있다.

환급가능세액 = 신성 시점 전기까지의 이월매입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1) 2014 년 12 월 31 일 이전(포함)에 세무등기를 한 납세자의 환급비율은 2015 년·2016 년·2017 년 3 년간 이미 공제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와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세금완납증명서에 기재한 증치세액이 동기 전체 기공제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2) 2015 년 1 월 1 일 이후(포함)에 세무등기를 한 납세자의 환급비율은 실제경영기간 내에 이미 공제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와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세금완납증명서에 기재한 증치세액이 동기 전체 기공제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다.

전체 기공제매입세액 =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세금완납증명서, 농산품 구매증빙, 농산품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세금계산서, 도로/교량 통행료” 상 기재된 매입세액

2018 년 증치세 기말이월공제세액 환급업종목록

번호	업종명칭
1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2	계약업
3	화학섬유제조업
4	비금속광물제품업
5	금속제품업
6	통용설비제조업
7	전용설비제조업
8	자동차제조업
9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설비 제조업

번호	업종명칭
10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11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12	계측기/측정기 제조업
13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14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15	연구 및 시험발전
16	전문기술서비스업
17	과학기술 보급 및 응용서비스업
18	생태보호 및 환경정비업

관련법령:

- 2018 년 일부 업종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 (2018)(재세[2018]70 호)

8.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 손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전출해야 하는지?

증치세잠행조례에 의거, 아래 항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비증치세과세대상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구매 화물 또는 과세대상노무

(2) 비정상손실의 구매화물 및 관련 과세대상노무

(3) 비정상손실의 재공품, 완제품에 소모된 구매화물 또는 과세대상노무

(4)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이 규정한 납세인 자가사용 소비품

(5) 상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화물의 운송비용과 면세화물 판매의 운송비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손실”이란, 관리부진으로 도난·분실·곰팡이변질이 초래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재 또는 부동산에 법에 따른 몰수·소각·철거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화재의 경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연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상기 비정상손실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출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령:

- <증치세잠행조례> 제 10 조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및 영업세잠행조례실시세칙 수정에 대한 결정>(재정부, 국가세무총국령 제 65 호) 제 24 조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 호) 제 28 조 3 관

9. 사용했던 고정자산 판매 시 증치세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사용했던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구매일자 및 취득 시 공제여부에 따라 증치세의 계산방법은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판매 고정자산 취득 시기 및 공제여부	일반납세자 증치세 세액 계산
1	2009년 1월 1일 이후 구매 또는 자가제조	매출액=세금포함 매출액/(1+13%) 납부할 증치세=매출액*13%
2	2009년 1월 1일 이전 구매 또는 자가제조하고 회사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하였을 경우	
3	2009년 1월 1일 이후 구매 또는 자가제조, 하지만 아래 원인으로 인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아직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 비증치세과세대상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구매 화물 또는 과세대상노무 (2) 비정상손실의 구매화물 및 관련 과세대상노무 (3) 비정상손실의 재공품, 완제품에 소모된 구매화물 또는 과세대상노무 (4) 공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이 규정한 납세인 자가 사용 소비품 (5) 상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화물의 운송비용과 면세화물 판매의 운송비	매출액=세금포함 매출액/(1+3%) 납부할 증치세=매출액*2% (3% 징수율에 2%로 감면세율로 징수) 소규모납세자와 동일
4	2009년 1월 1일 이전 구매 또는 자가제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령:

- 증치세 징수율 간소합산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 36호)“
- <증치세 징수율 통합에 관한 통지>(재세[2014]57호)
- <증치세 개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8]170호)
- <일부 재화에 대한 저세율 적용 및 간이방법 징수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09]9호) 제 2조



김일중(Kim Il Chung)

Managing Partner / CPA (Korea, US Delaware)

CTAC ADVISORY(SHANGHAI)CO.,LIMITED

Tel: + 86 21 6406 6403

Mobile: + 86 186 0210 9447 (China)

Email: ilchung.kim@ctacgroup.com

Website: www.ctacgroup.co.kr

ADD: Room 909, Building D, Hong Qiao Tian Jie, No. 1058 Shenbinnan Road, Shanghai
PRC(201106)